특정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시설공사 하자관련 특정감사 -

2020. 10.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1.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단위 : 천원, 명)

일련번호	소 관	건 명	처 분 요 구		
			처분종류	재 정 상 조치금액	신 분 상 조치인원
1	영주시 ■■■■과	◒◒◒◒◒(@@@@@@) 조성사업 하자 미조치	주의	-	훈계1

2. 신분상 조치인원 명세

연번	제 목	관 련 자			문 책	비 고
		소 속	직위(직급)	성 명		
1	◒◒◒◒◒(@@@@@@) 조성사업 하자 미조치				훈계	

3. 처분요구일람표

1) ◒◒◒◒◒(@@@@@@)조성사업 하자 미조치 (주의) ····· 2

일련번호	1	감사자	시설6급 김상태		공개(○), 비공개( )
신분상 조치인원		재정상 조치방법		재정상 조치금액	
수감부서(처리부서)	영주시 ■■■■과	처분요구일자		회신기일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조성사업 하자 미조치**

소 관 청 영주시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영주시 ■■■■과에서는 '◒◒◒◒◒(@@@@@@) 조성사업'으로 건립된 전통사상체험관의 유지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며,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10절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시설공사 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영주시 ■■■■과에서는 2019년 5월 30일 준공 된 '%%%% 체험관'을 관리하면서 정기적인 하자검사를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나 2020년 2월 10일 1회만 실시하고,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공종에 대하여

최종검사를 2020년 6월 1일 실시하였으나, 계약상대자 입회 없이 일방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였다.

또한, 2회에 걸쳐 실시한 하자검사를 형식적으로 이행하여 '이상 없음'으로 결과 처리를 하였고 2020년 9월 14일 감사기간 중 현장확인 결과 아래 [사진]과 같이 야외공연장 누수로 인하여 백화현상 발생 등 오염되고 미장부분이 탈락되어 있는 등 공연장으로 사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는 등 하자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사진] &&&&&&관 야외공연장 하자 현황

		
누수로 인한 백화현상	**누수로 인한 오염**	**누수로 인한 미장부분 탈락**

조치할 사항 **영주시장은**

① 관련 규정에 따라 하자검사를 성실히 수행하여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고

② 또한, 시설물 관리업무 전반적 사항에 대한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③ 관련자는 「경상북도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에 따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